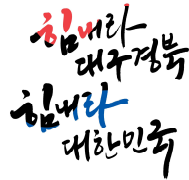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3. 31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보험팀	담당자	·팀장 이재연, 사무관 조숙현, 주무관 조지예 ·☎ (044) 201-4760, 4761, 4870	
보도일시		2020년 3월 3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3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『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』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,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

-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.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(이하 ‘자동차손배법’)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
-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,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.
- ※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,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으며,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.

-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.
 -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,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.
-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한편,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되었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, 정비업체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.
-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, 그간 3차례('05, '10, '18) 공표 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분쟁이 계속되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-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“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,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팀 조숙현 사무관(☎ 044-201-47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